

기획재정부령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획 재 정 부 (국 채 과)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개인투자용국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채법」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투자용국채에 관한 사무처리의 보고 등 기획재정부령에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방법에 관한 사항

-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청약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기관에 관한 사항

- 1) 「국채법」 제8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전자등록기관을 추가함(안 제5조)
- 2)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상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 3) 전자등록기관의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다.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 1) 「국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장부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

제2항)

- 2) 국채등록부 및 부분의 반출금지 의무를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장부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 3)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말소, 등록필통지서의 교부, 장부의 열람·보존 등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 4)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자등록기관이 개인투자용국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에 관한 사항

- 1)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대상에서 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19. ~ 6. 28.)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개인투자용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청약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한 기관에서 이를 처리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은행”을 각각 “국채사무처리기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한국은행 및 해당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응모상황·모집액결정내용·국채대금납입상황등”을 “국채사무처리기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원리금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에 교부받을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국채사무처리기관”을 “해당 등록기관(영 제13조제2항의 장부 중 당해 기명자의 명의로 등록된 장부를 작성·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채사무처리기관”을

“해당 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채사무처리기관”을 각각 “해당 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국채의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중 “국채에 대한”을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한”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채등록부에 신규등록”을 “신규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신규등록,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제1호가목, 제29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채등록부”를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부를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국채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채사무처리기관”을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인투자용국채발행자금수급장
2. 개인투자용국채발행액원장
3. 발행인관리계좌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부를 말한다)
4. 고객관리계좌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를 말한다)
5.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말한다)
6. 개인투자용국채원리금상환자금수급장

제26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각호”를 “제1항각호 및 제2항각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존한다.

제30조 중 “한국은행이”를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로, “한국은행 총재가”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장이”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 수수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등록 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업무 등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발행방법) ① (생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2조(발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 있으며, 개인투자용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청약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국채사무처리기관) ①국채에 관한 사무는 <u>한국은행</u> 의 본점·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처리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에서 <u>정한 기관</u> 에서 이를 처리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국채사무처리기관) ① --- ----- <u>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u> ---. ----- ----- <u>정하는 바에 따른다.</u>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대리점은 <u>한국은행</u> 이 이를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u>한국은행</u> 에 대하여 그 대리점의 설치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u>국채사무처리기관</u> ----- -----. ----- <u>국채사무처리기관</u> ----- -----.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 -----

②등록국채의 기명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바뀔 때에는 그 후임자 또는 기명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u>국채사무처리기관</u>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바뀔 때에도 또한 같다.	<u>부를 작성·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u>. ②----- ----- ----- ----- <u>해당 등록기관</u>----- -----. -----.
제20조(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①등록국채의 기명자 및 그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u>국채사무처리기관</u>에 그의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u>국채사무처리기관</u>은 국채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권자등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인감을 신고하게 할 수있다. ③등록국채의 기명자가 그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u>국채사무처리기관</u>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①----- ----- --- <u>해당 등록기관</u>----- -----. ②<u>해당 등록기관</u>----- ----- ----- -----. ③----- ----- <u>해당 등록기관</u>----- -----.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등)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등록국채에 대한 원금상환 또는 매입소각이 있는 때에는 수취인의 영수증서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등) ---- ----- ----- -----

또는 국채등록통지서에 의한 확
인으로 그 등록국채에 대한 등
록을 말소한다. <단서 신설>

제22조(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국채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관한 것은 국채등록부에, 국채증권에 관한 것은 국채증권신탁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필통지서의 교부) 국
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등록부
에 신규등록, 변경등록, 질권 기
타 담보의 등록 또는 신탁에 관
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의
내용을 기재한 등록필통지서를
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주식·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국채의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한 -----

제23조(등록필통지서의 교부) --
 ----- 신규등록 -----

 -----.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신규등록,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가

제24조(국채등록부 및 부분의 반출금지등) ①국채등록부 및 그 부분은 이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주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부분비치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25조(국채등록부의 열람등) 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등록국채의 기명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채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26조(장부의 비치) ①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사무처리에 관

목, 제29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국채등록부 및 부분의 반출금지등) ①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부를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국채등록부의 열람등) ① -----

----.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국채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장부의 비치) ①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

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한다)-----

---.

1. ~ 8. (현행과 같음)

②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인투자용국채발행자금수급장

2. 개인투자용국채발행액원장

3. 발행인관리계좌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부를 말한다)

4. 고객관리계좌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를 말한다)

5.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말한다)

6. 개인투자용국채원리금상환자금수급장

②제1항각호에 규정된 장부는 당해국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신 설>

③제1항각호 및 제2항각호-----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존한다.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
-----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
-----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장이 -----
-----.

제31조(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 수수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업무 등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